

『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8월 23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생산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우선 구매실적이 저조한 바, 미비한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9조 (우선구매 촉진) 정비
 - ① 시장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의거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구매목표율이 포함된 우선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하기관 및 군·구에 시달하고, 우선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

선 구매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③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(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33, 팩스 032-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“사회적기업 등의 생산재화나”를 “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의거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구매목표율이 포함된 우선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하기관 및 군·구에 시달하고, 우선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 구매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우선구매 촉진) 시장은 <u>사회적기업 등의 생산재화나 서비스</u> 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.	제9조(우선구매 촉진) ① ----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 호에 의거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----- -----.
<신 설>	② 시장은 구매목표율이 포함된 우선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하기관 및 군·구에 시달하고, 우선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 구매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.

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관계 법령	☐ 사회적기업 육성법 ☐ 제12조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 조례 정비 대상	
관련 자료	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사회적기업 육성법

- 제12조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 ①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"공공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(이하 "사회적기업제품"이라 한다)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생산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없음.

4. 작성자

- 산업위원회 김 영 분 의원